

# 국내외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연구\*

## A Study on the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Opening Hours in Foreign Countries and Korea

윤 희 윤(Hee-Yoon Yoon)\*\*

### 〈 목 차 〉

I. 서론	5. 아시아(중국, 대만, 일본)의 기준
II. 외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기준 분석	III. 국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의 분석과 개정안
1. 국제기구(IFLA/UNESCO)의 기준	1. 최소 개관시간 기준의 분석과 문제점
2. 북미(미국, 캐나다)의 기준	2. 최소 개관시간 기준의 개정안
3. 유럽(영국, 프랑스)의 기준	IV. 요약 및 결론
4. 오세아니아(호주)의 기준	

### 초 록

도서관은 지역주민이 장서 및 서비스를 가장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에 개관해야 한다. 달리 말해서 모든 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적절한 개관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구(IFLA/UNESCO)와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한국)의 공공도서관기준을 대상으로 최소 개관시간을 분석하고 봉사대상인구에 기초하여 국내 공공도서관 자료실의 바람직한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1만명 미만은 45시간, 1만명~2만명 미만은 50시간, 2만명~5만명 미만은 5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은 60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은 65시간, 30만명 이상은 70시간)을 제안하였다.

키워드: 주당 개관시간, 공공도서관기준, 도서관서비스

### ABSTRACT

Public Libraries should be open at times when the community can make the most effective and convenient use of library collections and services. In other words, public library must provide adequate open hours for local residents. In this respect, this study analyzed the minimum opening hours per week in public library standard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IFLA/UNESCO) and major countries (USA, Canada, UK, France, Australia, China, Taiwan, Japan, Korea) and suggested a desirable minimum standards (under 10,000 population-45 hours ; over 10,000~20,000 population-50 hours ; over 20,000~50,000 population-55 hours ; over 50,000~100,000 population-60 hours ; over 100,000~300,000 population-65 hours ; over 300,000 population-70 hours) for opening hours per week of public library based on population size in Korea.

Keywords: Opening hour per week, Public library standard, Library service

\* 이 연구는 2012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yhy@daegu.ac.kr)

• 접수일: 2013년 2월 19일 • 최초심사일: 2013년 3월 2일 • 최종심사일: 2013년 3월 26일

## I. 서론

모든 공공도서관의 보편적 정체성은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평생학습 및 문화활동 거점, 소통과 공감을 위한 커뮤니티센터이다. 그러나 평생학습, 문화활동, 커뮤니티공간으로서의 역할은 다른 여러 문화기반시설에서도 수행하므로 공공도서관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체는 지식정보센터 및 게이트웨이 기능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편적 정체성을 강화할 때 가장 중시해야 할 재화는 하이브리드형 장서이며, 이를 수집·보존하는 궁극적 목적은 당대 및 후대를 위한 대출·열람서비스이다. 그래서 지구촌의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장서중심의 접근·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설정·운영하고 있는데, 그 제도적 장치가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이다. 대다수 연방제 국가는 중앙정부 차원의 범용기준을 제정하지 않은 채 주정부 단위로 법적 또는 권장기준을 두는 반면, 단방제 국가는 관계법령 또는 전국기준(지침)에 개관시간을 규정하거나 자치법규에 포함시켜 적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모든 공공도서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개관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대신에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관련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도서관협회의 『한국도서관기준』은 도서관 시스템상의 위상과 규모를 감안하여 각각의 개관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자료접근 및 이용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의 하나인 개관시간을 국가가 제정한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의 조례에 반영할 것인지, 공공도서관 시스템 차원에서 개별관의 위상이나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제시할 것인지 아니면 단일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 외에 문화선진국처럼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또는 서비스 수준별로 세분하여 각각 달리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검토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도서관연구소가 공공도서관의 연장개관 문제를 중심으로 수행한 협력연구를 제외하면 바람직한 개관시간 기준을 제시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제기구(IFLA/UNESCO),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륙별 주요 국가(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과 대만, 일본), 국내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또는 지침을 정밀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결과는 『도서관법』에 개관시간 기준을 신설하거나 『한국도서관기준』의 개관시간 기준을 개정하는데 이론적 배경 내지 논리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 II. 외국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기준 분석

### 1. 국제기구(IFLA/UNESCO)의 지침

지구촌 공공도서관계가 범용할 수 있는 개관시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나 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대표하는 2001년판 IFLA/UNESCO 지침의 경우, '3.9.2 개관시간'에서 "도서관은 최선의 접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서 삶을 영위하고, 노동에 종사하며, 학습하는 사람들에게 최대한 편리한 시간에 개방되어야 한다"고 원론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개정판도 그 대상을 '지역사회 주민'으로 수정하였을 뿐, 인구구간별 또는 도서관의 규모별 개관시간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있다.<sup>1)</sup>

### 2. 북미(미국, 캐나다)의 기준과 지침

#### (1) 미국

미국은 50개주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로서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공공도서관 사무를 관장한다. 이를 위한 기준 내지 지침은 총 39개주의 주립도서관, 주도서관협회, 주정부 산하의 도서관 행정부서, 위원회나 협의회 등에서 제정·운용하고 있는데, 10개주 기준은 법적 기준인 반면에 29개주 기준은 자발적 기준(지침)이다.<sup>2)</sup> 그 가운데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제시한 기준이나 지침은 총 27개이며, 이들은 다시 단일의 공통기준, 인구구간별 기준, 서비스 수준별 기준, 그리고 인구구간 및 서비스 수준별을 조합한 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단일의 공통기준을 제시한 사례로는 2개주(Nevada, North Carolina)<sup>3)</sup>를 들 수 있다. Nevada주는 일부 야간과 주말을 포함하여 분관 및 아울렛당 주당 평균 개관시간<sup>4)</sup>을 20시간으로 설정한 반면에 North Carolina주는 완전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주당 60시간을 최소 개관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인구구간별로 주당 최소 개관시간만 제시한 사례로는 총 10개주<sup>5)</sup>를 들 수 있다. 이들

1) Philip Gill, ed,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Munchen : Saur, 2001), p.42 ; Christie Koontz and Barbara Gubbin, eds,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Berlin/Munich : Saur, 2010)  
 2) 윤희윤,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 p.78.  
 3) Nevada Library Association, *Minimum Public Library Standards For Nevada*(2010), <<http://nsla.nevadaculture.org/dmdocuments/minimumpubliclibrarystandards2010.pdf>> ; North Carolina Public Library Director's Association, *Guidelines for North Carolina Public Libraries*(1998) <<http://www.ils.unc.edu/daniel/NCPLDA/guidelines.html>> [cited 2012. 9. 20]  
 4) 도서관 시스템의 평균 개관시간은 관할지역 내의 총 개관시간을 분관이나 아울렛의 수로 나눈 시간은 말한다.  
 5) 10개 주는 Kansas, Maine, Missouri, Nebraska, New York, Pennsylvania, Rhode Island, Tennessee, Utah, Vermont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은 <표 1>에 집약·비교한 것처럼 개관시간의 최소 기준을 다양한 인구구간으로 세분하여 각각 달리 제시하고 있다.<sup>6)</sup>

<표 1> 미국의 인구구간별 최소 개관시간 기준(10개주)

인구(명)	주	Kansas	Maine	Missouri	Nebraska*	New York	Pennsyl- vania	Rhode Island	Tennessee**	Vermont	Utah**
500 미만		15~20			10	12					
500~1,499			15		15	20				14~22	20
1,500~2,499				25							
1,000 미만	15~25										
1,000~2,500	20~40	20						20			
1,000~3,000										20~32	
2,501~5,000		25		30	25	35	35			28~38	
3,000~5,000											
5,001~7,500		35									
5,000~10,000	35~60			48				35	34~52		
5,000~14,999						35					
7,501~10,000			45								
10,000 미만				35							
10,000~19,999								50			32
10,000~25,000	55~75	50	55	56				45			
15,000~24,999					40						
20,000~49,999								60			50~72
25,000 이상											
25,000~49,999	68~75					50		55			
25,000~100,000		60	65	64		55					
50,000 이상									65	65	60
100,000 이상	68~80				65						

\* 주당 최소 개관일은 인구 1,499명은 이하는 3일, 1,500~2,499명은 4일, 2,500~9,999명은 5일, 10,000명 이상은 6일이며, 야간/주말 개관시간은 인구 500명 미만은 각각 1시간, 500~4,999명은 각각 2시간, 5,000~9,999명은 야간 4시간과 주말 2시간, 10,000명 이상은 야간 6시간과 주말 5시간임

\*\* 야간, 주말 포함

를 말한다.

6) Public Library Standards Committee, *Standards For Kansas Public Libraries(2006 Revision)* <<http://nckls.mykansalibrary.org/wp-content/uploads/2010/07/standardsforpubliclibrary2006.pdf>> ; Maine Library Association, *Maine Public Library Standards : Striving for Excellence(2007)*, p.39. <[http://mainelibraries.org/\\_documents/mla\\_standards\\_2007.pdf](http://mainelibraries.org/_documents/mla_standards_2007.pdf)> ; Robin Carnahan and Sara Parker, *Missouri Public Library Standards : An Implementation Plan(2005)*, p.10. <<http://www.sos.mo.gov/library/libstan.pdf>> ; Nebraska Library Commission, *Guidelines for Public Library Accreditation(2010)*, pp.5-6. <[www.nlc.state.ne.us/epubs/L4000/H018-2009.pdf](http://www.nlc.state.ne.us/epubs/L4000/H018-2009.pdf)>[http://www.google.com/#sclient=psy&hl=en&source=hp&q=Nebraska+Library+Commission+Guidelines+for+Public+Library+Accreditation%2C2009+&aq=&aqi=&aql=&oq=&pbx=1&bav=on,2,or\\_gc\\_r\\_pw.&fp=739cf39a78c48e1&biw=1351&bih=772](http://www.google.com/#sclient=psy&hl=en&source=hp&q=Nebraska+Library+Commission+Guidelines+for+Public+Library+Accreditation%2C2009+&aq=&aqi=&aql=&oq=&pbx=1&bav=on,2,or_gc_r_pw.&fp=739cf39a78c48e1&biw=1351&bih=772)> ; The Library Development/Public Library System Directors Organization Minimum Standards Task Force, *New York's Public Libraries Meet Minimum Standards*, <<http://www.nysl.nysed.gov/libdev/ministan.pdf>> ; General Assembly of the Commonwealth of Pennsylvania, *The Pennsylvania Public Library Code :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December(2010)*, p.23. <[http://jsg.legis.state.pa.us/resources/documents/ftp/ongoing-projects/2010-21-SR343%20Library%20Report%201-4-11%20\\_YH\\_.pdf](http://jsg.legis.state.pa.us/resources/documents/ftp/ongoing-projects/2010-21-SR343%20Library%20Report%201-4-11%20_YH_.pdf)> ; The Office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 *Minimum Standards for RI Public Libraries*, <<http://www.oils.ri.gov/pubs/plstandards/index.php>> ; Planning and Development Division, Tennessee State Library and Archives, and Department of State, *Tennessee Minimum Standards for Non-Metropolitan Public Libraries Revised(2003)*, p.16. <<http://www.tn.gov/tsla/lps/minimum%20standards.pdf>> ; State of Utah, Department of Community & Culture, *Standards for Utah Public Libraries(2010)*, p.6. <<http://library.utah.gov/documents/LibraryCertificationFY2009Final.pdf>> ; State of Vermont, Department of Libraries, *Minimum Standards for Vermont Public Libraries(1998)* <<http://libraries.vermont.gov/sites/libraries/files/standards/1998standards.pdf>> [cited 2012. 9. 25]

그리고 봉사대상 인구구간을 설정하지 않은 채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제시한 사례로는 3개주 (Florida, Georgia, Virginia)를 들 수 있다. Florida와 Georgia는 도서관 시스템당 1개관의 최소 개관시간을 3단계 서비스 수준별로, Virginia는 최소 개관시간을 3단계 투자등급별로 제시하였는데 주요 내용을 비교하면 <표 2>와 같다.<sup>7)</sup>

<표 2> 미국의 서비스 수준별 최소 개관시간 기준(3개주)

주	서비스 수준	개관시간	비 고
Florida	기본	40	
	강화	68	20시간은 야간과 주말 배정
	최고	76	주 7일 및 야간 4일
Georgia	기본	40	
	완전	55	시스템 내의 1개관은 주당 하루를 저녁 8:00까지 개관
	최적	72	
Virginia	A(비즈니스 여건변화를 감안한 투자등급)	40	최소 연속 3일 야간 및 적절한 주말 시간을 포함
	AA(최상의 품질을 요구하는 투자등급)	68	20시간은 야간과 주말 배정
	AAA(비즈니스 주기와 무관한 가장 강한 투자등급)	76	주 7일 및 야간 4일

마지막으로 봉사대상인구 구간 및 서비스 수준을 조합하여 제시한 기준이나 지침은 12개주<sup>8)</sup>에 서 채택하고 있다. 그 가운데 Louisiana를 제외한 11개주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정리·비교하면 <표 3>과 같다.<sup>9)</sup> 반면에 특이한 사례에 속하는 Louisiana는 <표 4>와 같이 인구구간에 공공도서관

7) Florida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Florida Public Libraries, 2004, 2006 Revision(Standard 52 updated April, 2010)*, p.12. <[http://www.flalib.org/publications\\_tab\\_files/FLPubLibStds\\_Apr\\_2010.pdf](http://www.flalib.org/publications_tab_files/FLPubLibStds_Apr_2010.pdf)> ; GPLS Standards Committee, *Georgia Public Library Standards(2006)*, p.6 <<http://www.georgialibraries.org/lib/publiclib/standards.pdf>> ; Library of Virginia, *Planning for Library Excellence : Standards for Virginia Public Libraries(2009)*, p.42. <<http://www.lva.virginia.gov/lib-edu/ldnd/standards/PFLE.pdf>> [cited 2012. 9. 28]

8) 12개주는 Alabama, Colorado, Illinois, Indiana, Iowa, Kentucky, Louisiana, Montana, Oregon, South Dakota, Texas, Wisconsin을 말한다.

9) Joint Committee on Public Library Standards, Alabama Library Association, *A Plan for Excellence : Alabama Public Library Standards*, Rev. ed.(2005), pp.14-59. <<http://www.chamberscountylibrary.org/standards.htm>> ; The Colorado Public Library Standards Revision Committee, *Colorado Public Library Standards(2011)*. <[http://www.cde.state.co.us/cdelib/Standards/pdf/2011\\_Colorado\\_Library\\_Standards\\_FullText.pdf](http://www.cde.state.co.us/cdelib/Standards/pdf/2011_Colorado_Library_Standards_FullText.pdf)> ; Illinois Library Association, *Serving Our Public : Standards For Illinois Public Libraries*, Rev. ed.(1997), p.71 ; Indiana Library and Historical Board, "Public Library Standards : 590 IAC 6," <<http://www.in.gov/legislative/iac/T05900/A00060.PDF>> ; The Iowa Commission of Libraries, *In Service to Iowa: Public Library Standards*, 5th ed.(2010), p.21. <<http://www.statelibrar.yofiowa.org>> ; Kentucky Public Library Association, *Kentucky Public Library Standards: Direction and Service for the 21st Century*, 3rd ed.(2009), pp.14-16. <<http://kdla.ky.gov/librarians/plssd/Documents/KyPublicLibraryStandards2009.pdf>> ; Montana State Library, *Public Library Standards(2003)*, p.5. <[http://msl.mt.gov/for\\_Librarians/For\\_Public\\_Librarians/standards/adminrules.pdf](http://msl.mt.gov/for_Librarians/For_Public_Librarians/standards/adminrules.pdf)> ; Oregon Library Association, *Standards for Oregon Public Libraries(2010)*, p.4. <[http://data.memberclicks.com/site/ola/pld\\_standards\\_2010.pdf](http://data.memberclicks.com/site/ola/pld_standards_2010.pdf)> ; South Dakota State Library Board, *South Dakota Public Library Standards(2010)*, <<http://library.sd.gov/SDSL/publications/DOC/RPT-SDPubLibStandards.pdf>> ; Texas Library Association, *Texas Public Library Standards(2004)*, pp.12-13. <<http://www.tsl.state>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4권 제1호)

시스템상의 위상을 추가하여 중앙관과 분관으로 구분한 다음 서비스 수준별로 각각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제시하고 있다.

〈표 3〉 미국의 인구구간 및 서비스 수준별 개관시간 기준(11개주)

구분	서비스 수준	인구구간(명)													
		500 미만	500 ~ 1,500	1,000 ~ 2,499	1,500 ~ 3,449	2,500 ~ 4,999	3,500 ~ 9,999	5,000 ~ 24,999	10,000 ~ 39,999	25,000 ~ 49,999	40,000 ~ 74,999	50,000 ~ 10만	75,000 ~ 20만	10만 ~ 50만	50만 이상
Alaba- ma	최소	16					20	30	40			45		50	
	기본	20(4)					30(5)	40(5)	45(7)			50(10)		55(15)	
	우수	30(8)					40(8)	45(8)	50(10)			55(15)		60(20)	
Colora- do	25%	15.70	30.68		31.2		40.57	35.20	42.1				42.3		
	50%	25.30	36.65		43.7		48.50	45.85	59.0				51.0		
	75%	28.58	41.93		47.9		57.25	55.68	63.3				59.1		
	(95%)	41.00	50.10		59.0		68.20	66.20	65.9				66.1		
Illinois	최소	25	28		36		48	56	64			72			
	성장	28	36		40		56	64	68			72			
	안정	32	40		56		64	68	72						
	상급	36	48		64		72								
Indiana	기본	20(2/1)					30(2/1)			40(4/2 혹은 6/1)					
	권장	40(4/1)					50(4/1)			55(6/2 혹은 8/1)					
	특별	55(6/1)					60(8/1 혹은 6/2)			65(6/2 혹은 10/1)					
Iowa	최소	20(4)	20(5)		29(5)		41(5)	55(6)			61(6)				
	권장	22(5)	25(6)		36(6)		48(6)	58(6)			65(6)				
	우수	24(6)	25(6)	36(6)		48(7)		56(7)	65(7)			68(7)			
Ken- tucky	기본	35(3/4)						48(6/6)			60(9/8)				
	권장	40(4/8)						54(9/8)			65(12/8)				
	최고	48(12/12)						60(15/12)			70(18/12)				
Montana	최소	15			30			40	50						
	권장	25~40			40~50			50~60	60+						
Oregon	최소	20					30	40	50						
	적정	35					45	55	60						
	우수	50					60	7-	75						
South Dakota	최소	15			30			40	50						
	권장	25~40			40~50			50~60	60+						
Texas	기본	25					30	40	45		50	60	65	68	
	권장	30					35	45	50		60	65	70	72	
	포괄	35					40	50	55		65	70	72	76	
Wis- consin	기초	30			44		57	64	62		64	65			
	적정	35			50		59	67	64		67				
	권장	42			53		61	69	65		69				
	우수	48			58		64	68	67		68	69			

\* 괄호 속의 수치 중에서 Alabama주는 평일 오후 5시 이후 및 주말의 최소 개관시간을, Indiana 및 Kentucky주의 슬래시 앞 수치는 야간 개관시간을, 뒤의 수치는 주말 개관일을, Iowa주는 주당 개관일수임

tx.us/plstandards/tplstandards04.pdf) : Public Library Development Team, Wisconsin Public Library Standards, 5th ed.(2010), p.38 <http://www.dpi.state.wi.us/pld/pdf/standards.pdf> [cited 2012. 9. 30]

〈표 4〉 미국의 인구구간 및 서비스 수준별 개관시간 기준(Louisiana주)

인구구간(명)	중앙관			분관		
	기본	권장	포괄	기본	권장	포괄
1~4,999	40	44	48	15~20	30	35
5,000~9,999				35	40	45
10,000~24,999				40	45	50
25,000~49,999	48	52	56	45	50	55
50,000~75,000				50	50	65
75,001~99,999	56	60	64	-	-	-
100,000~200,000						
200,001 이상	64	68	72	-	-	-

(2) 캐나다

캐나다는 10개주(Alberta, British Columbia, Manitoba, New Brunswick, Newfoundland and Labrador, Nova Scotia, Ontario, Prince Edward Island, Quebec, Saskatchewan)와 3개 준주(Northwest Territories, Nunavut, Yukon)로 구성된 연방제 국가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차원에서 제정·적용하는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은 없는 대신에 주정부별로 개관시간에 대한 기준이나 지침을 제시하고 있는데 Ontario, Alberta, Nova Scotia주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간추리면 〈표 5〉와 같다.<sup>10)</sup>

〈표 5〉 캐나다의 인구구간별 및 서비스 수준별 개관시간 기준(3개주)

Ontario		Albert			Nova Scotia			
인구(명)	개관 시간	인구(명)	기본 서비스	모범 서비스	인구(명)	C (최소)	B (평균)	A (우수)
1,000 미만 (Deposit Stations)	15	0~600	15	36+	1,500~3,500	17.5	20.0	25.0
1,000~5,000 (Villages)	20~25	601~1,200	20	40+	3,500~5,000	25.0	30.0	35.0
5,000~10,000 (Medium)	25~35	1,201~3,000	25	44+	5,000~15,000	30.0	35.0	40.0
10,000~35,000 (Towns)	35~60	3,001~5,000	37	54+	15,000~35,000	40.0	45.0	50.0
35,000 이상 (Urban)	65+	5,001~10,000	43	57+	35,000~50,000	45.0	50.0	55.0
		10,001~25,000	47	63+	50,000+	55.0	60.0	65.0
		25,001~60,000	55	64+				
		60,001~100,000	57	65+				
		100,000 이상	59	65+				

10) Ontario Public Library Guidelines Monitoring and Accreditation Council, *Ontario Public Library Guidelines For Municipal and County Public Libraries*, 4th ed.(Ontario : Ontario Library Service-North, 2007) <<http://www.olsn.ca/uploadedFiles/OLSN/Guidelines/Guidelines%20ed4%20Appendix%20B.pdf>> ; Alberta Municipal Affairs, *Standards*

### 3. 유럽(영국, 프랑스)의 기준

#### (1) 영국

2008~2009년도를 기준으로 영국에는 총 4,517개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한다.<sup>11)</sup> 이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소위 전국기준인 『Comprehensive, Efficient and Modern Public Libraries : Standards and Assessment』는 2001년에 제정되어 3차례(2004, 2006, 2008) 개정되었다. 그 가운데 2001년판 전국기준에 명시된 주당 개관시간 기준을 간추리면 <표 6><sup>12)</sup>와 같이 모든 대규모 도서관은 주당 45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하며, 분관을 포함한 서비스 포인트가 고정된 위치에 존재하면 주당 60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

<표 6> 영국 「전국기준」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

구분	개관시간 기준	
목표	도서관 행정당국은 이용자를 위하여 적당한 개관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PLS 3과 4)	
PLS 3	인구 1,000명당 모든 도서관의 누적 개관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는 행정구역별 거주인구를 말한다. 런던구의 인구는 매일 통근자 및 방문자의 유동인구를 감안한 권장기준을 적용한다</li> <li>· 인구 1,000명당 누적 개관시간은 개별 서비스 포인트의 개관시간을 합산한 것을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한다.</li> <li>· 2001년 4월에 시작되는 3개년 계획주기는 모든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4분위 분포 중에서 상위 25%를 목표로 하며, 이것은 인구 1,000명당 연간 128시간을 말한다.</li> </ul>
PLS 4	주당 최소 45시간을 개관하는 대규모 도서관의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규모 도서관은 거주인구가 40,000명 이상이면서 매년 기대 방문자수가 200,000명에 상당하는 지역의 도서관을 말하며, 이동도서관은 제외한다.</li> <li>· 2001년 4월에 시작되는 3개년 계획주기는 모든 행정당국으로 하여금 4분위 분포 중에서 상위 25%를 목표로 한다.</li> <li>· 고정된 서비스 포인트는 주당 60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li> </ul>

#### (2) 프랑스

프랑스에는 2008년말을 기준으로 약 4,398개의 공공도서관이 존재한다.<sup>13)</sup> 이들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은 학교 및 지역도서관 지침인 『Directives Concernant les Bibliothèques Communales et Scolaires』 제7장(Horaire d'ouverture) 제21조에서 <표 7>과 같이 인구구간별로 규정하고 있다.<sup>14)</sup>

& Best Practices for Public Libraries in Alberta, 2010, p.37, <<http://www.albertalibraries.ca/uploads/1103/standardsapprovedfin85821.pdf>> ; Library Boards Association of Nova Scotia and Council of Regional Librarians, *Standards for Nova Scotia Regional Public Libraries*, 2nd ed.(Nova Scotia : The Working Group, 2001), p.18. <<https://www.library.ns.ca/files/standards.pdf>> [cited 2012. 10. 1]

11) <http://www.lboro.ac.uk/departments/dis/lisu/lampost10/inst10.html> [cited 2012. 10. 1]

12) DCMS, *Comprehensive, Efficient and Modern Public Libraries : Standards and Assessment*(2001)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libraries\\_archives\\_for\\_all\\_assessment.pdf](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libraries_archives_for_all_assessment.pdf)> p.11. ; *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 3rd rev. ed.(2008) <<http://webarchive.nationalarchives.gov.uk/+http://www.culture.gov.uk/images/publications/PublicLibraryServicesApril08.pdf>> [cited 2012. 10. 10]

13)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Bibliothèques : CHIFFRES CLÉS 2011 : Statistiques de la Culture," p.102. <<http://www2.culture.gouv.fr/culture/deps/chiffres-cles2011/08-bibliotheques-2011.pdf>> [cited 2012. 11. 20]



〈표 7〉 프랑스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

인구(명)	개관시간 기준
2,500 이하	6
2,501~5,000	8~10
5,001~10,000	12~20
10,001~15,000	20~24
15,001 이상	25~

#### 4. 오세아니아(호주)의 기준

연방제 국가인 호주의 경우도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기준을 규정한 범국가적 도서관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대신에 호주도서관정보협회(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가 제시한 권장기준과 주정부별로 제정한 법적 기준에 근거하여 개관시간을 설정·운용하고 있다.

우선 대표적인 민간단체인 ALIA가 2011년에 개정한 『호주공공도서관 기준과 지침』의 ‘G4 Opening Hours’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sup>15)</sup> 그러나 개관시간에 관한 수량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표 8〉 호주 ALIA 지침의 개관시간 기준

구분	개관시간 기준
4.2 Guidelin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관시간은 인구규모, 현재적 및 잠재적 고객의 요구평가, 지역사회 특성(예, 청소년, 아동과 노인이 있는 가정)에 기초하여 결정한다.</li> <li>•도서관과 지역사회의 다른 시설(상점, 극장, 기업체, 대중교통시설)과의 근접성 및 그들의 운영시간을 고려한다.</li> <li>•개관시간에는 아침, 오후, 야간, 주말의 시간이 포함된다.</li> <li>•개관시간은 일관성이 있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며 고객이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li> <li>•결정된 개관시간은 인구 및 지역사회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li> <li>•개관시간의 변경은 미리 충분히 홍보되어야 하며, 서비스 포인트의 외부, 도서관 웹사이트, 도서관 홍보 자료에 공지되어야 한다.</li> <li>•이동도서관의 개관시간은 정차한 후 고객이 접근할 때부터 머물며 운영한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이동시간은 개관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li> </ul>

다음으로 여러 주정부도 주당 개관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인구수가 많은 순서인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주를 대상으로 각각의 주도서관협의회(이사회) 또는 주립도서관이 제정하여 주내 공공도서관에 적용하는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정리하면 〈표 9~10〉과 같다.<sup>16)</sup>

14) Département de l'éducation, de la culture et du sport, "Directives Concernant les Bibliothèques Communales et Scolaires," <<http://www.bibliovalais.ch/fs/documents/directivesfr.pdf>> [cited 2012. 11. 20]

15)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Beyond a Quality Service :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Canberra :ALIA, 2011), p.20.

〈표 9〉 호주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 New South Wales주)

인구(명)	분관이 없는 중앙도서관*	분관이 있는 중앙도서관**	
	주당 개관시간	분관의 주당 평균 개관시간 (중앙관 개관시간 제외)	주당 총개관시간=주당 중앙관 개관시간+ (분관수×분관의 주당 평균 개관시간)
10,000 미만	30	17	30+(분관수×17)
10,000~20,000	43	20	43+(분관수×20)
20,000~50,000	53	28	53+(분관수×28)
50,000~100,000	56	30	56+(분관수×30)
100,000 이상	58	41	58+(분관수×41)
비 고	* 정규적이 운영하고 처리업무가 집중화되어 있으며 주요 장서가 집적된 단일의 사이트나 멀티사이트의 운영센터 및 중앙 서비스 포인트를 말한다. ** 주당 총개관시간에는 중앙도서관, 모든 분관 및 이동도서관의 개관시간이 포함된다.		

5. 아시아(중국, 대만, 일본)의 기준

중국은 국가차원의 『도서관법』이 없고, 광역자치단체(성, 시)의 복무표준에서 개관시간을 규정하고 있다. 그 가운데 북경시(北京市), 상해시(上海市), 강서성(江西省), 안휘성(安徽省)의 복무표준에 규정된 각급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기준을 발췌하면 〈표 11〉과 같다.<sup>17)</sup>

〈표 10〉 호주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 Queensland 및 Victoria주)

Queensland			Victoria	
인구(명)	주당 최소시간	연간 최소시간 (50주 기준)	도서관(인구, 명)	주당 최소 개관시간*
1,000 미만	6	300	중앙도서관(전지역)	68**
1,000~3,000	12	600	대분관 : 도시·교외 중심지(15,000~20,000)	61
3,001~5,000	16	800	소분관 : 교외 중심지(10,000~15,000)	61
5,001~7,000	21	1,050	Express 분관(기존분관 수혜 소외지역)	61
7,001~10,000	31	1,550	E-분관(전지역)	주 7일/1일 24시간
10,001~15,000	34	1,700	* 일요일 포함, 10월~4월	
15,001~20,000	38	1,900	** 야간 개관일 : 4일	
20,001~30,000	40	2,000		
30,001~40,000	45	2,250		
40,001 이상	50	2,500		

16)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Living Learning Libraries :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NSW Public Libraries (Sydney : the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2008), pp.7-8. <[http://www.plmns.wa.gov.au/web/Site/46/Uploads/living\\_learning\\_libraries\\_2008.pdf](http://www.plmns.wa.gov.au/web/Site/46/Uploads/living_learning_libraries_2008.pdf)> ; Greater Victoria Public Library Board, Guidelines for Service/Facility Standards(Melbourne : GVPL, 2006), p.9. <http://gvpl.ca/assets/PDF/Reports--Planning/GuidelinesforService-1.pdf> ; State Library of Queensland, Public Library Standards Steering Group, Guidelines and Standards for Queensland Public Libraries : Operational Services Standard(2009), p.2. <[http://www.slq.qld.gov.au/\\_data/assets/pdf\\_file/0012/144102/SLQ\\_-\\_Operational\\_Services\\_Standard.pdf](http://www.slq.qld.gov.au/_data/assets/pdf_file/0012/144102/SLQ_-_Operational_Services_Standard.pdf)> [cited 2012. 10. 25]

17) [www.bjys.gov.cn/export/sites/ys/fs3/b/c/h/1184902584968.html](http://www.bjys.gov.cn/export/sites/ys/fs3/b/c/h/1184902584968.html) ; <http://www.libnet.sh.cn/sla/standard1.html> ; [http://www.jdzlib.cn/news/news\\_view.asp?newsid=4038](http://www.jdzlib.cn/news/news_view.asp?newsid=4038) ; [www.ahwh.gov.cn/upload/10000000000000/.../6y78OW67U167pk7.doc](http://www.ahwh.gov.cn/upload/10000000000000/.../6y78OW67U167pk7.doc) [cited 2012. 10. 21]

〈표 11〉 중국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주요 광역자치단체)

구 분	개관시간 기준
北京市图书馆条例 (제2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공도서관은 매일 독자에게 개관해야 하며, 그 중에서 시도서관 주당 70시간 이상, 현도서관(县图书馆)은 주당 63시간 이상을 개관한다.</li> <li>•아동청소년도서관 주당 43시간 이상을 개관하되, 법정 국경일과 학생의 동하게 방학기간에는 매일 8시간 이상을 개방한다.</li> <li>•다른 각급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각각의 주관행정기관의 규정에 따른다.</li> </ul>
上海市公共图书馆行业服务标准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 및 자치구도서관은 주당 70시간 이상, 가도(향, 진)도서관은 주당 56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li> <li>•각급 아동청소년도서관(구역)은 주당 36시간 이상, 축일휴일학교의 동하게 방학 때는 매일 주당 7시간 이상을 개방해야 한다.</li> </ul>
江西省公共图书馆服务标准 (제3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도서관(省图书馆)은 주당 70시간 이상, 자치주자치구시립도서관은 주당 60시간 이상, 구현도서관은 주당 56시간 이상, 향진종합문화센터 정기간행물열람실은 주당 42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li> <li>•각급 도서관의 아동서비스부서(실)는 주당 38시간 이상을 개관하고 휴일 및 동하게 방학 때는 하루 8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li> </ul>
安徽省公共图书馆服务标准 (제3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성도서관(省图书馆)은 주당 70시간 이상, 시도서관은 주당 60시간 이상, 현(시, 구)도서관은 주당 56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li> <li>•각급 도서관 아동서비스부서(실)은 연평균 주당 35시간 이상을 개관하고 휴일 및 동하게 방학 때는 하루 8시간 이상을 개관해야 한다.</li> </ul>

반면에 대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가지고 있다. 2001년에 개정된 『圖書館法』(總統華總一義字 第9000009320號) 제5조에 근거하여 2002년 10월 28일자로 제정된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教育部台(91)社(三)字 第91156118號)은 '6. 운영관리'의 제28조에서 "공공도서관 개방시간은 다른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매주 44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토요일, 일요일, 야간에도 가능한 한 개방한다."<sup>18)</sup>고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의 법적 위상이나 규모를 불문하고 동일한 개관시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실정법인 『도서관법』(법률 제59호) 제10조에서 "공립도서관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도서관을 설치하는 지방공공단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문부과학성고시 제132호)도 제2장(市町村立図書館) 제9조(개관일시 등)에서 "주민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의 상황이나 주민의 다양한 생활시간 등을 고려한다. 또한 이동도서관은 적절한 주기에 의한 운행 등에 노력한다"<sup>19)</sup>고 규정하였을 뿐 주당 개관시간 기준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별 공공도서관 운영관리의 주체인 교육위원회는 상위법령인 법률과 기준에 근거하여 각각 제정한 '도서관조례(규칙)'에서 개관시간 기준을 규정하

18) 中華民國 教育部,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http://www.ncl.edu.tw/public/Attachment/7112810545171.pdf>> [cited 2012. 11. 22]

19) 文部科學省, "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 <[http://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ourei/cont\\_001/009.htm](http://www.mext.go.jp/a_menu/sports/dokusyo/hourei/cont_001/009.htm)> [cited 2012. 10. 10]

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인 동경, 대판, 경도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sup>20)</sup>

<표 12> 일본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주요 광역자치단체)

구분	도서관	개관시간 기준	
東京都立図書館規則 (교육위원회규칙 제11호)	제2장(中央図書館) 제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금요일(1월 4일 제외) : 오전 10:00~오후 9:00. 단,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면 오전 10:00~오후 5:30</li> <li>토요일(1월 4일 제외) : 오전 10:00~오후 5:30</li> </ul>	
	제3장(多摩図書館) 제1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금요일(1월 4일 제외) : 오전 9:30~오후 7:00. 단 휴일인 경우는 오전 9:30~오후 5:00</li> <li>토요일(1월 4일 제외) : 오전 9:30~오후 5:00</li> </ul>	
京都市図書館の組織及び 運営に関する規則 (교육위원회규칙 제2호)	제1장 (도서관 이용) 제1조 별표	中央図書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成人図書室 및 参考図書室 : 오전 10:00~오후 8:30. 단 토요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상의 휴일은 오전 10:00~오후 5:00</li> <li>児童図書室 : 오전 10:00~오후 5:00</li> </ul>
		분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岩倉図書館, 東山図書館, 吉祥院図書館, 向島図書館 및 久我のもり図書館 : 오전 10:00~오후 5:00. 단, 월요일 및 목요일(휴일인 경우는 제외)은 오전 10:00~오후 7:00</li> <li>醍醐図書館 : 오전 10:00~오후 5:00. 단, 수요일 및 목요일(휴일인 경우는 제외)은 오전 10:00~오후 7:00</li> <li>기타 분관 : 오전 10:00~오후 7:30. 단, 토요일, 휴일은 오전 10:00~오후 5:00</li> </ul>
	右京中央図書館 伏見中央図書館 醍醐中央図書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전 10:00~오후 8:30. 단, 토요일 및 휴일은 오전 10:00~오후 5:00</li> </ul>	
大阪市立図書館規則 (교육위원회규칙 제12호)	제1조	中央図書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전 9:15~오후 8:30. 단, 토요일,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상의 휴일은 오전 9:15~오후 5:00</li> </ul>
		기타 도서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오전 10:00~오후 7:00. 단, 토요일, 휴일은 오전 10:00~오후 5:00</li> </ul>

### III. 국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의 분석과 개정안

#### 1. 최소 개관시간 기준의 분석과 문제점

먼저 권장기준은 전문직 단체를 대표하는 한국도서관협회의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6. 공공도서관의 이용자봉사'에서 도서관의 위상이나 규모를 기준으로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표 13>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sup>21)</sup> 즉, 지역을 불문하고 공공도서관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

20) [http://www.kyoiku.metro.tokyo.jp/kohyojoho/reiki\\_int/reiki\\_honbun/g1012113001.html#b1](http://www.kyoiku.metro.tokyo.jp/kohyojoho/reiki_int/reiki_honbun/g1012113001.html#b1) ;

[http://www.city.kyoto.jp/somu/bunsho/REISYS/reiki\\_honbun/ak10209831.html](http://www.city.kyoto.jp/somu/bunsho/REISYS/reiki_honbun/ak10209831.html) ;

<http://www.oml.city.osaka.jp/pub/kisoku.html> [cited 2012. 9. 29]

21)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서울 : 동협회, 2003), p.24.

하여 중소형 분관을 제외한 대다수 공공도서관은 주당 67시간 이상을 개관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표 13〉 「한국도서관기준」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

6.2 대출열람봉사	공공도서관의 자료실 개관시간은 도서관의 규모, 지역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조절하되, 지역주민이 최대한 편리한 시간대에 개관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 주당 최소 개관시간은 단일 도서관, 중앙관(또는 시스템본부), 대분관의 경우에는 67시간, 중분관은 55시간, 소분관은 36시간(시간제는 25시간)이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 이상의 지역 내에 공공도서관(분관 포함)이 2개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도서관의 휴관요인을 다르게 지정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상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법적 기준의 경우, 실정법인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은 「도서관법」 제27(설치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제정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의 시행규칙(운영규칙, 열람규칙 등)에서 개관(이용, 열람)시간을 규정·적용하고 있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 소속의 각 2개관을 대상으로 개관시간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분석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국내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소관주체별 대표적인 사례)

구 분	자치법규	개관(열람)시간 기준
자치단체 소관	서울특별시강남구립도서관 및 문고 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제3조(열람시간) ① 도서관 및 문고 내에서의 열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도서관 : 06:00~22:00 2. 문고 : 하절기 09:00~18:00 / 동절기 09:00~17:00 / 토요일 09:00~13:00
	인천광역시 서구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2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유열람실 : 06:00~22:00 2. 자료실 : 10:00~18:00 (다만, 토·일요일은 10:00~17:00) 3. 문화교실 : 10:00~22:00
교육지원청 소관	부산광역시시립도서관 운영규칙	제2조(개관시간) ①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도서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열람 및 대출 시간은 제1항의 개관시간 안에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열람 규칙	제2조(열람시간) ① 도서관의 개관시간은 매일 07:00부터 22:00까지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자료실의 열람시간 및 도서의 대출시간은 제1항의 개관시간의 범위 안에서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이상에서 분석한 국내 공공도서관의 개관시간 기준을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주당 개관시간을 규정한 기준의 성격은 <표 15>에 집약한 것처럼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으로 양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정부차원의 법령(기준)에 명시한 국가는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인 반면에 정부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자치조례 또는 도서관규정에 포함시킨 국가로는 중국, 일본, 한국을 들 수 있다. 후자인 권장기준은 미국과 한국이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자치조례와 권장기준을 검토·수정하여 전국의 모든 공공도서관이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주당 개관시간을 결정할 때 적용한 기준은 <표 16>처럼 단일의 결정변수와 복수의 결정변수로 집약할 수 있다. 전자의 가장 보편적인 대상은 봉사대상인구이고, 후자에는 봉사대상인구와 서비스 수준이 조합된 사례가 많다. 그 외에 영국(전국기준)과 한국(권장기준)의 경우, 공공도서관 시스템상의 위상, 즉 중앙관과 분관을 구분하여 각각 최소 개관시간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

<표 15> 각국 개관시간 기준의 성격

국 가	법적 기준		권장기준 (도서관협회 등)
	정부법령(기준)	자치조례(도서관규정)	
미 국	■(10)		■(29)
캐나다	■(3)		
영 국	■		
프랑스	■		
호 주	■		
중 국		■	
대 만	■		
일 본		■	
한 국		■	■*

( )은 주정부의 수를 의미하며, \*는 권장기준임

<표 16> 각국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에 적용된 결정변수

국 가	단일의 결정변수							복수의 결정변수		
	모든 도서관 (분관 등 포함)	완전한 서비스제 공 도서관	개별 도서관 중심	자치 단체 지위	봉사 대상 인구	도서관 서비스 수준	시스템상 도서관의 위상	봉사대상 인구+서 비스 수준	봉사대상인 구+시스템 상 위상	봉사대상인구 +서비스 수준+ 시스템상 위상
미 국	■(1)	■(1)			■(10)	■(3)		■(11)		■(1)
캐나다					■(1)			■(2)		
영 국							■			
프랑스					■					
호 주					■(1)				■(2)	
중 국				■						
대 만	■									
일 본				■						
한 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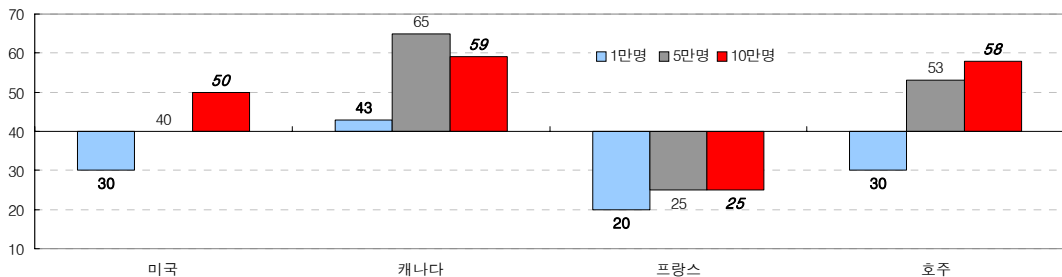
( )은 주정부의 수를 의미하며, \*는 권장기준임

치단체 수준에 따라 성(시)도서관과 현(자치주, 자치구, 시)도서관에 적용하는 개관시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도 최소 개관시간을 설정할 때 적용한 시스템상의 위상과 규모를 국제사회가 범용하는 봉사대상인구로 변경하여 구간별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주당 최소 및 최대 개관시간 기준은 국가마다 적용된 결정변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대강을 이해하기 위하여 국가별로 비교하면 <표 17>과 같이 최소 개관시간은 프랑스와 호주, 미국과 캐나다, 한국, 대만, 영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긴 반면에 최대 개관시간은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와 미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길다. 한 가지 특징은 대다수 국가가 봉사인구 부담이 많은 대규모 도서관일수록 분관이나 소규모인 경우보다 최소 개관시간을 길게 규정한 반면에 영국은 대규모 도서관보다 분관을 포함한 고정된 서비스 포인트의 개관시간을 더 길게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다시 주요 국가로 한정하되 3개 인구구간(1만명, 5만명, 10만명)으로 구분하여 국내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의 주당 근로시간인 40시간을 기준점으로 삼아 비교하면 <그림 1>과 같다. 즉, 인구구간을 불문하고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의 순으로 최소 개관시간이 길다. 그러나 국내 권장기준은 시스템상의 위상을 반영하여 '단일도서관, 중앙관(또는 시스템본부), 대분관은 67시간, 중분관은 55시간, 소분관은 36시간(시간제는 25시간)이 바람

<표 17> 각국의 최소 및 최대 개관시간 기준 비교

국가	최소	최대	비 고
미 국	15	68	Alabama, Colorado, Florida, Illinois, Indiana 등 11개 주
캐나다	15	65	Ontario, Alberta, Nova Scotia
영 국	45	60	최소는 대도서관에, 최대는 고정된 서비스 포인트(분관)에 적용됨
프랑스	6	25+	「학교 및 지역도서관 지침」 제21조
호 주	6	68	New South Wales, Queensland, Victoria주
중 국	56	70	최소는 사주현향진도서관에, 최대는 시(성)도서관에 해당함
대 만	44	-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제28조
일 본	58	73	최소는 분관 등에, 최대는 도도부현립도서관에 적용됨
한 국	36	67	최소는 소분관, 최대는 단일도서관중앙관대분관에 적용됨



<그림 1> 주요 국가의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최소 개관시간 기준 비교

직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대다수 자치단체의 경우, 권역 내에 산재하는 복수의 공공도서관이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명무실하다. 따라서 단위도서관·중앙관과 규모별 분관으로 구분·제시한 개관시간을 봉사대상인구 구간별로 세분하여 각각에 적합하면서도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 2. 최소 개관시간 기준의 개정안

국내 공공도서관에 최소 개관시간을 규정한 법적 기준은 없는 반면에 권장기준은 도서관 시스템상의 위상과 규모를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개관시간을 설정할 때 적용되는 국제적 보편성은 봉사대상인구이며, 그 명분과 논거는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를 위한 지식정보센터 및 문화기반시설인 이상, 내적 구성요소인 연면적이나 장서수보다 지역사회의 규모변수를 대표하는 봉사대상인구의 많고 적음이 직원의 업무수행 및 서비스 부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에 봉사대상인구를 결정변수로 삼아 구간별 세분기준과 각각의 최소 개관시간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봉사대상 인구구간의 결정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인구구간별로 제안하려면 1개관당 봉사대상인구의 실제 분포를 분석하여 구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2010년말을 기준으로 총 669개관(자치단체 소속 438개관, 교육청 소속 231개관) 중에서 14개 지역대표도서관(충남과 전남<sup>22)</sup>은 미지정으로 미포함)을 제외한 655개관을 분석한 결과, 평균 봉사대상자수는 82,177명(중위수는 62,094명, 최소값은 2,306명, 최대값은 571,255명, 최빈값은 57,010명)이고 백분위 인구구간별 공공도서관수와 구성비율은 <표 18>처럼 전체의 약 50%에 해당하는 327개관의 봉사대상인구가 6만 2천명 미만이고, 그 누계의 약 10%는 2만명 미만, 약 20%는 3만명 미만, 약 40%는 5만명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분위 분포로 살펴본 1개관당 평균 봉사대상인구는 <그림 2>와 같이 하위 25%가 30,431명, 50%가 62,094명, 75%가 110,786명 이하이므로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공공도서관이 1개관당 7만명 이하에게 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구구간별 공공도서관 분포비율의 편차와 불균형을 감안하면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직원배치에 적용된 5개 구간(5만 미만, 5만~10만 미만, 10만~20만 미만, 20만~50만 미만, 50만 이상)이나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에 규정된 6개 구간(2만명 미만, 2만명~5만명 미만, 5만명~10만명 미만, 10만명~30만명 미만, 30만명~50만명 미

22) 전남의 경우, 2011년 10월에 전남도립도서관이 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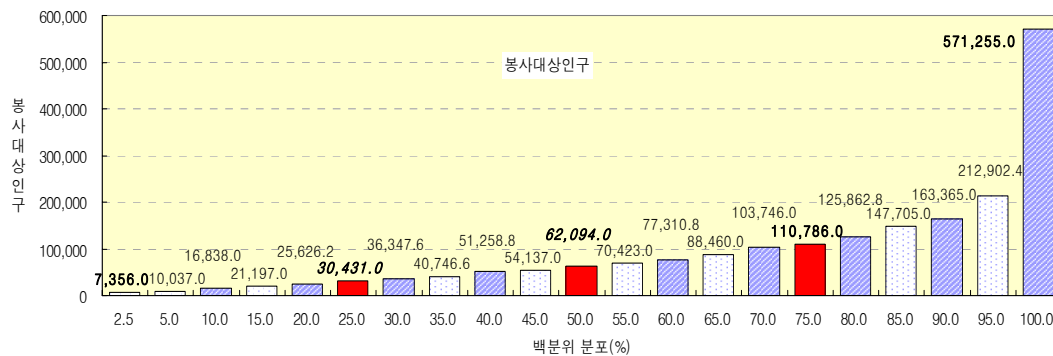


만, 50만명 이상)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논리적 및 현실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도서관기준』의 5개 인구구간 중에서 최소인 5만명 미만은 『지방자치법』 제7조(시·읍의 설치기준 등) 제1항이 시로 승격하기 위한 기준을 인구 5만명 이상으로, 제2항 3호는 인구 2만 이상의 도시형태를 갖춘 2개 지역 이상의 인구가 5만명 이상인 군으로, 제3항은 읍으로 승격하기 위한 기준을 인구 2만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관법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서 최소 면적기준인 264㎡ 이상인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를 2만명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세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18〉 백분위 구간별 봉사대상인구 및 도서관수

백분위 구간(%)	봉사대상인구(명)	도서관수(%)	누계(%)
5.0 미만	2,06 ~ 9,172	30(5.6)	30(4.6)
5.0~10.0 미만	10,037 ~ 16,753	33(5.0)	63(9.6)
10.0~20.0 미만	16,838 ~ 25,048	66(10.1)	129(19.7)
20.0~30.0 미만	25,432 ~ 36,226	67(10.2)	196(29.9)
30.0~40.0 미만	36,378 ~ 50,959	65(9.9)	261(39.8)
40.0~50.0 미만	51,092 ~ 61,714	66(10.1)	327(49.9)
50.0~60.0 미만	62,094 ~ 76,842	62(9.9)	389(59.4)
60.0~70.0 미만	77,273 ~ 103,743	69(10.0)	458(69.9)
70.0~80.0 미만	103,746 ~ 124,895	63(9.6)	521(79.5)
80.0~90.0 미만	125,154 ~ 162,921	65(9.9)	586(89.5)
90.0~95.0 미만	163,365 ~ 202,595	35(5.3)	621(94.8)
95.0 이상	204,138 ~ 6571,255	34(5.2)	655(100.0)



〈그림 2〉 사분위 분포별 평균 봉사대상인구

둘째, 『도서관법시행령』의 6개 인구구간 가운데 2만명 미만, 20만명~50만명 미만 및 50만명 이상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전자는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라 2009년부터 매년 50개관 이상이 건립되고 있고, 법적 최소 면적기준을 충족시키는 공립형 작은도서관(문고, 분관·분실 등)이 지속적

으로 설립·운영될 경우에 1개관당 평균 봉사대상인구도 감소할 것이기 때문에 구간을 더 세분할 필요가 있다. 후자의 경우, 인구구간 20만명~50만명 미만은 16개관, 50만명 이상은 2개관(지역대표도서관을 포함하면 16개관)에 불과하여 다른 구간별 도서관수와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분리해야 할 명분이 약하다.

따라서 총 655개 공공도서관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봉사대상인구를 <표 19>와 같이 6개 구간(1만명 미만, 1만명~2만명 미만, 2만명~5만명 미만, 5만명~10만명 미만, 10만명~3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으로 재구성하면 1만명 미만을 제외한 인구구간별 공공도서관의 비율이 정규분포에 근접한다. 이를 이탈하는 1만명 미만을 포함시킨 이유는 이 구간에 4.6%(39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실재할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기반시설로서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소수의 대규모보다 다수의 중소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표 19> 최소 개관시간 기준 설정을 위한 봉사대상인구 구간의 개정안

현행기준		개정안		
법적 기준(시설자료)	권장기준(직원배치)	인구구간	비율	도서관수
2만명 미만	5만명 미만	1만명 미만	4.6	30
2만명~5만명 미만		1만명~2만명 미만	9.0	59
		2만명~5만명 미만	24.9	163
5만명~10만명 미만	5만명~10만명 미만	5만명~10만명 미만	29.6	194
10만명~30만명 미만	10만명~20만명 미만	10만명~30만명 미만	30.5	200
30만명~50만명 미만	30만명~5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	1.4	9
50만명 이상	50만명 이상			

(2) 인구구간별 최소 개관시간 기준안

2007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주간에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접근서비스를 확대하고 야간운영에 따른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중에 자료실을 오후 10시까지 개방하여 자료출납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무인 예약대출기 및 자가반납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2007년에 79개관, 2008년에 117개관, 2009년에 253개관, 2010년에 257개관, 2011년에 300개관이 참여하였다.<sup>23)</sup>

이처럼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공공도서관이 오후 10시까지 개관하는 현실 외에도 인력구성 및 지역별 요구수준의 차이 등과 같은 현실적 이유를 들어 최소 개관시간 기준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 이를 용인하려면 인구구간, 서비스 수준, 시스템상의 위상 등을 결정변수로 삼아 최소 개관시간을 설정한 주요 선진국 기준의 무용론을 논리적으로 반증해야 한다. 더구나 국내의

23) [http://www.clip.go.kr/intro/intro\\_05\\_08.jsp](http://www.clip.go.kr/intro/intro_05_08.jsp) [cited 2012. 10. 30]

경우,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표방하는 정부의 정책적 접근과 추진, 일부 자치단체장 및 시민사회의 기대를 수용한 연중 무휴개관 사례, 그리고 <표 20>처럼 자치단체별 평균 개관시간수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시도별 차이검정에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사회를 위한 핵심 대민서비스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관시간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표 20> 시도별 평균 개관시간수의 차이검정 결과

시도	평균	N	표준편차	T-검정 결과									
				Levene의 등분산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 확률 (양쪽)	평균 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서울	77.00	81	16.434	등분산이 가정됨	1.033	.310	2.520	653	.012	3.508	1.392	.775	6.240
부산	78.73	26	16.431										
대구	65.81	16	10.515										
인천	71.06	16	15.498										
광주	67.69	13	17.741										
대전	71.95	19	17.520										
울산	63.56	9	16.226										
경기	76.80	133	15.799										
강원	65.00	45	14.680										
충북	73.96	28	15.255										
충남	74.65	49	15.429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2.555	465.795	.011	3.508	1.373	.810	6.206
전북	68.67	42	19.863										
전남	67.38	55	18.992										
경북	62.71	56	11.522										
경남	64.17	48	15.790										
제주	70.21	19	21.6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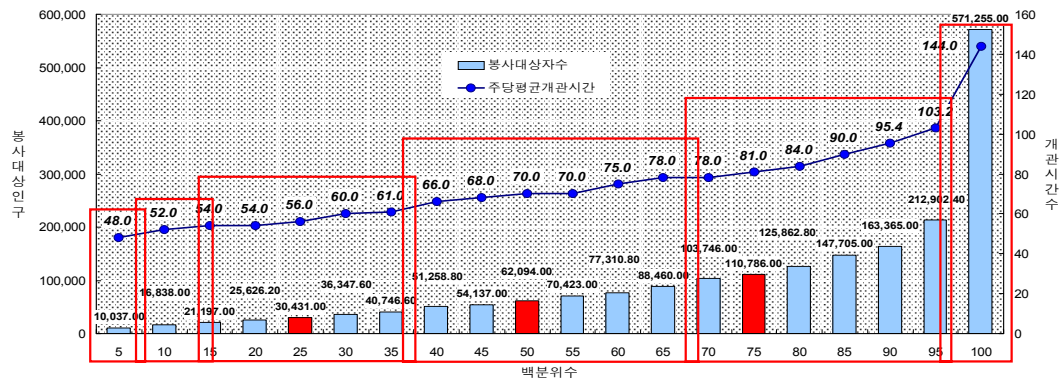
그렇다면 공공도서관의 인구구간별 주당 최소 개관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우선 비용부담과 서비스 만족도 측면에서 최소 개관시간의 단축 또는 연장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개관시간을 단축하면 인건비와 운영관리비 등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역주민의 접근·이용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반면에 개관시간을 연장하면 접근성 및 대출열람의 증가에 따른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도서관의 사회적 이미지도 제고되지만 추가인력 투입과 장시간 개관 등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심화된다.<sup>24)</sup> 따라서 약간의 비용증가를 감내 하더라도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기대수준을 높이려면 최소 개관시간 기준이 현재의 평균 개관시간수보다 많아야 하는지, 적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2010년말을 기준으로 지역 대표도서관을 제외한 총 655개관을 분석한 결과, 주당 평균 개관시간수는 71.26시간(중위수는 70

24) Ann Curr, "Opening Hours : The Contest Between Diminishing Resources and a 24/7 World,"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9, No.6(2003), pp.375 - 385.

시간, 최소값은 42시간, 최대값은 144시간, 최빈값은 54시간)이었으며, 백분위별 구간별 평균 봉사대상자수와 주당 개관시간수의 분포는 <그림 3>과 같이 나타났다.

따라서 선진국 기준,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 국내 공공도서관의 평균 개관시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인구구간별 자료실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제안하면 <표 21>과 같다. 요컨대 1만명 미만에 봉사하는 대다수 분관을 비롯한 소규모 공공도서관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은 총45시간(주중에 휴관하는 하루를 제외한 4일×9시간 + 토요일 및 일요일 총 9시간), 그 이상은 인구구간별로 각각 5시간을 추가하여 1만명~2만명 미만은 50시간, 2만명~5만명 미만은 5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은 60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은 65시간, 그리고 30만명 이상에 봉사하는 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70시간을 최소 개관시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분관을 포함한 소규모 공공도서관은 자치단체 또는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재처럼 9시에 개관하는 획일적 방식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개관 및 폐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인구구간별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자수 및 주당 평균 개관시간 분포

<표 21>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인구 구간별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안)

인구구간	실제 평균 개관시간수	한국도서관협회 권장기준 (2003년)	개정안	
			최소 개관시간	산출근거
1만명 미만	45.4	36 (소분관, 2만명~3만명)	45	주중 : 4일×9시간, 토일 : 9시간
1만명~2만명 미만	48.0~52.0		50	주중 : 4일×9시간, 토일 : 14시간
2만명~5만명 미만	54.0~61.0	55(중분관, 5만명~6만명)	55	주중 : 4일×10시간, 토일 : 1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	66.0~78.0		60	주중 : 4일×11시간, 토일 : 16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	78.0~103.2	67 (대분관·단일도서관·중앙관·시스템본부, 8만명~10만명)	65	주중 : 4일×12시간, 토일 : 17시간
30만명 이상	104.0~144.0		70	주중 : 4일×13시간, 토일 : 18시간

#### IV. 요약 및 결론

도서관 개관시간은 자료접근 및 이용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 중의 하나이다. 이에 국제기구,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 오세아니아의 호주, 아시아의 중국·대만과 일본, 그리고 국내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기준과 지침을 분석한 다음에 인구구간별 주당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당 개관시간을 규정한 기준은 법적 기준과 권장기준으로 양분된다. 법적 기준이 있는 국가 중에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대만은 법령에 포함시킨 반면에 중국, 일본, 한국은 자치조례나 도서관규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권장기준은 미국과 한국에 존재한다.

둘째, 주당 개관시간을 결정할 때 적용한 가장 보편적인 변수는 봉사대상인구이고, 그 다음으로 봉사대상인구와 서비스 수준을 조합한 사례가 많다. 그 외에 영국(전국기준)과 한국(권장기준)은 도서관 시스템상의 위상을 중앙관과 분관을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치단체 수준에 따라 성(시)도서관과 현도서관에 적용하는 개관시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셋째, 주당 최소 개관시간은 프랑스와 호주, 미국과 캐나다, 한국, 대만, 영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최대 개관시간은 프랑스, 영국, 캐나다, 한국, 호주와 미국, 중국, 일본의 순으로 길다. 주요 4개국의 최소 개관시간을 3개의 인구구간(1만명, 5만명, 10만명)으로 구분하여 비교한 결과, 구간을 불문하고 프랑스, 미국, 호주, 캐나다의 순으로 길게 나타났다.

넷째, 국내 공공도서관의 최소 개관시간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봉사대상인구는 6개 구간(1만명 미만, 1만명~2만명 미만, 2만명~5만명 미만, 5만명~10만명 미만, 10만명~30만명 미만, 30만명 이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서관법시행령』의 시설 및 자료기준을 위한 최소 인구구간인 2만명 미만을 2개(1만명 미만, 1만명~2만명 미만)로 세분한 이유는 실제로 4.6%(39개관)의 공공도서관이 이 구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려면 중소규모로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선진국 기준, 한국도서관협회의 권장기준, 국내 공공도서관의 평균 개관시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6개의 인구구간별 자료실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의 경우, 1만명 미만에 봉사하는 소규모 도서관은 총 45시간, 그 이상은 구간별로 각각 5시간을 추가하여 1만명~2만명 미만은 50시간, 2만명~5만명 미만은 55시간, 5만명~10만명 미만은 60시간, 10만명~30만명 미만은 65시간, 그리고 30만명 이상에 봉사하는 대도서관 및 지역대표도서관은 70시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2만명 미만에 봉사하는 소규모 도서관은 자치단체나 도서관의 상황을 고려하여 개관 및 폐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도서관협회는 본 연구의 결과를 활용하여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의 최소 개관

시간을 개정하고,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도서관법」에 인구구간별로 공공도서관의 주당 최소 개관시간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참고문헌

- 文部科學省. “公立図書館の設置及び運営上の望ましい基準.”  
〈[http://www.mext.go.jp/a\\_\\_menu/sports/dokusyo/hourei/cont\\_\\_001/009.htm](http://www.mext.go.jp/a__menu/sports/dokusyo/hourei/cont__001/009.htm)〉  
[cited 2012. 10. 10].
- 윤희윤. “국내외 공공도서관 직원배치기준의 분석과 시사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42권, 제1호(2011. 3), pp.73-95.
- 中華民國 教育部. “公共圖書館設立及營運基準.”  
〈<http://www.ntl.edu.tw/public/Data/9101613473771.pdf>〉 [cited 2012. 11. 22].
-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기준작성특별위원회 편. 2003년판 한국도서관기준. 서울 : 동협회, 2003.
- Australian Library and Information Association. *Beyond a Quality Service : Strengthening the Social Fabric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Australian Public Libraries*. Canberra : ALIA, 2011.
- Curr, Ann. “Opening Hours : The Contest Between Diminishing Resources and a 24/7 World.” *Journal of Academic Librarianship*, Vol.29, No.6(2003), pp.375 - 385.
- DCMS. *Comprehensive, Efficient and Modern Public Libraries : Standards and Assessment*. London : DCMS, 2001.
- DCMS. *Public Library Service Standards*, 3rd rev. ed. London : DCMS, 2008.
- Gill, Philip ed. *The Public Library Service : IFLA/UNESCO Guidelines for Development*. Munchen : Saur, 2001.
- Koontz, Christie and Barbara Gubbin, eds. *IFLA Public Library Service Guidelines*. Berlin/Munich : Saur, 2010.
-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Living Learning Libraries : Standards and Guidelines for NSW Public Libraries*. Sydney : the Library Council of New South Wales, 2008.
- Ministè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Bibliothèques : CHIFFRES CLÉS 2011 : Statistiques de la Culture.” 〈<http://www.bibliovalais.ch/fs/documents/directivesfr.pdf>〉  
[cited 2012. 11. 20].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03 Korea Library Standards*. Seoul : The Association, 2003.
-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 Technology. "Desirable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http://www.mext.go.jp/a\\_\\_menu/sports/dokusyo/hourei/cont\\_\\_001/009.htm](http://www.mext.go.jp/a__menu/sports/dokusyo/hourei/cont__001/009.htm)〉  
[cited 2012. 10. 10].
- Republic of China, Mistry of Education. "Standards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http://www.ntl.edu.tw/public/Data/9101613473771.pdf>〉 [cited 2012. 11. 22].
- Yoon, Hee-Yoon.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Staffing Standards for Public Library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Vol.42, No.1(Mar. 2011), pp.73-95.

